



[ 2017.3.21] [ 242 , 2017.3.21, ]

( ) 044 - 205 - 7217

1

1 ( ) ( " " ) 16 ( 가 )

2 ( )

1. " "

2. " "

3. " ( 가 " " " ") 가 1  
2 「 」 2 3

4. " 가 「 가 」 83 2 1 「 」 73 2 1 가 5

. 「 」 2  
. 「 」 2 1 1  
. 「 가 」 2 3  
. 「 」 44 1 2  
. 「 」 8 2 1 4 22

. 3

3 ( )

4 ( )

2 「 가 」 가 1, 1 2

5 ( )

2

가

4

5 2(

) 「 가 」

83 3 「 」

73

3

1,

1 2

4 「

」

가

가

1.

2.

6 ( )

가

1.

가

2.

3.

4.

가

가

( 2

1

)

1

가

1.

2.

가

가

3.

가

2

4.

가

7 ( 가 )

2

가

가

가

( 6 2

)가 「

」 6 1

2

1

가

---

8 ( ) ( 가 3 3 ) , . .

1.

2.

가.

.  
. .  
. ,

3.

가.

.  
. .  
. .

4.

2 " " 가  
, . ,  
가

가

1.

2.

가

3.

가

4.

가

" "

9 ( ) 가 . .

1, 1 2, 4 「

」 가 .

1

---

10 ( .가 )  
3

가

1. 「 」

2. 「 」 . , .

3. 「 」 ( )

가

3

1. 가

2. 가

가

가

2

가

2

2 4

가

가

7 1

1

, 7 2

2

1

1

가

가

1.

:

2.

가

:

1 . 2 4

가



---

18 ( )

「 」

가

가

< 242 ,2017.3.21 >

1 ( )

2 ( )

가

**징계양정 기준(제4조제1항, 제5조의2, 제9조 관련)**

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,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	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
1. 성실 의무 위반				
가. 공금횡령·유 용 및 업무상 배임	파면	파면-해임	해임-강등	정직-감봉
나.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	파면	해임	강등-정직	감봉
다. 부작위·직무 태만(라목에 따 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) 또는 회계질서 문란	파면	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라. 소극행정	파면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마. 직무 관련 주 요 부패행위의 신고·고발 의 무 불이행	파면-해임	강등-정직	정직-감봉	감봉-견책
바. 부정청탁에 따 른 직무수행	파면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사. 부정청탁	파면	해임-강등	정직-감봉	견책
아.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지 급받은 경우	파면-해임	강등-정직	정직-감봉	감봉-견책

자. 기타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	견책
2. 복종의 의무 위반 가.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. 기타	파면  파면-해임	해임  강등-정직	강등-정직  감봉	감봉-견책  견책
3.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.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. 무단결근 다. 기타	파면  파면-해임	해임  해임-강등 강등-정직	강등-정직  정직-감봉 감봉	감봉-견책  견책 견책
4. 친절·공정의 의무 위반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	견책
5. 비밀 업무의 의무 위반 가. 비밀의 누설·유출 나.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.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. 개인정보 무단조회·열람 및 관리 소홀 등	파면  파면-해임  파면-해임	파면-해임  해임-강등  강등-정직	강등-정직  정직  정직-감봉	감봉-견책  감봉-견책  감봉-견책
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	견책



마. 그 밖의 보안 관계 법령 위반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	견책
6. 청렴의 의무 위 반	별표 4와 같음			
7. 품위 유지의 의 무 위반 가. 성폭력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,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 상 성폭력) 나. 그 밖의 성폭 력 다. 성희롱 라. 성매매 마. 기타	파면  파면 파면-해임 파면-해임	파면-해임  파면-해임 해임-강등 강등-정직	해임-강등  강등-정직 정직-감봉 감봉	강등-정직  감봉-견책 감봉-견책 견책 견책
8. 영리 업무 및 겸 직 금지 의무 위 반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	견책
9. 정치 운동의 금 지 위반	파면	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10. 집단 행위의 금 지 위반	파면	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<p>※ 비고</p> <p>1. 제1호다목에서 “부작위”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제1호라목에서 “소극행정”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.</p> <p>3. 제1호마목에서 “주요 부패행위”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</p>				

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.

4. 제1호바목에서 “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”이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.
5. 제1호사목에서 “부정청탁”이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.
6. 제1호아목에서 “성과상여금”이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.
7. 제7호가목에서 “업무상 위력 등”이란 업무,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.
8. 제7호다목에서 “성희롱”이란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, 제7호라목에서 “성매매”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.
9.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